

대학평의원회

- 1. 회의제목 : 대학평의원회(2025.06.12.)
- 2. 회의일시 : 2025-06-12 목 09:30 ~ 10:00
- 3. 회의장소 : 본관 3층 회의실

4. 참석인원

구분	인원	성명
참석인원	10명	정인호, 김보나, 이갑래, 이재영, 송호준, 오세준, 조종건, 김훈, 김덕수, 김호경
불참인원	4명	구자경, 정태진, 신유성, 백운

5. 회의안건

평택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 6. 내용첨부 : 대학평의원회 회의록_20250612.pdf 별첨

7. 의 견

(동의)김훈 : 확인완료. 수고하세요

위의 사실을 확인함.

2025.06.12

부 의 장	정 인 호	2025/06/16	확인
위 원	이 갑 래	2025/06/16	확인
위 원	이 재 영	2025/06/16	확인
위 원	송 호 준	2025/06/19	확인
위 원	오 세 준	2025/06/19	확인
위 원	조 종 건	2025/06/20	확인
위 원	김 훈	2025/06/18	확인
위 원	김 덕 수	2025/06/19	확인
위 원	김 호 경	2025/06/19	확인
간 사	김 보 나	2025/06/13	확인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회의소집 통보일자	2025. 06. 05.(목)
위원정수 : 13명	재적위원 : 13명

1. 회의일시 : 2025. 06. 12.(목) 09:30

2. 회의장소 : 본관 3층 회의실

3. 참석여부

구분	성명	비고
참석인원 (9명)	(의장) 이갑래 (부의장) 정인호 (교원) 오세준, 송호준, 이재영 (직원) 김덕수 (위촉) 김훈, 조종건 (조교) 김효경	간사: 김보나
불참인원 (4명)	(교원) 구자경, 정태진 (직원) 백운 (학생) 신유성	

4. 안건

가. 평택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나. 기타 안건

5. 회의내용

김보나 간사(이하 "간사")가 대학평의원회 재적인원 13명 중 9명이 참석하여 회의 개최 성원이 됨을 보고하고 이갑래 의장(이하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가. 평택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학사지원팀 심광숙 팀장이 배석하여 평택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다. 국제협력팀에서 학부 유학생 편입과정의 다양화를 요청, 협의하였고 기존에는 3학년 편입만 가능했으나, 2학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임을 설명하다.

이재영 의원이 편입생 확대에 따른 효과에 대해 질의하자, 심광숙 팀장이 국제협력팀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편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한 개정임을 설명하다.

의장이 국내 학생의 편입에 대해 질의하자, 현재의 개정안은 외국인 학생에 대한 사항임

을 설명하다.

조종건 의원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특혜로 보이지 않는가 질의하자, 심광숙 팀장이 교육부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를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 계획」,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을 근거하여 외국인 학생 유치를 권장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송호준 의원이 타 대학의 사례에 대해 질의하자, 심광숙 팀장이 타 대학에서는 우리 대학에 비해 빠르게 학칙 등을 개정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조종건 의원이 외국인 학생 수요에 대해 질의하자, 의장이 스마트모빌리티학과에서도 우즈베키스탄 대학과의 공동학위를 논의한바 있으며, 국제협력팀 차원에서도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 각 학과들과 논의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김효경 의원이 이전 베트남 학생의 경우,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수학하고 일정 한국어능력을 갖춘 후 학부에 진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편입학이 가능하지 질의하자, 심광숙 팀장이 외국인 이중언어과정을 신설하여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임을 설명하고, 이중언어과정의 운영은 통역사를 고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강의할 예정임을 설명하다.

김덕수 의원이 통역사까지 활용한다면 재정적인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나 외국인 학생 유입을 위한 다양한 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더불어 의장이 현재 우리 대학에서 여러 가지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외국대학과의 협의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제도가 논의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학칙 개정안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 대학의 제도를 완화하는 과정으로 이해됨을 설명하다.

송호준 의원이 선투자의 개념으로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중국 전문대학이라든지 외국 대학과의 세부적인 논의와 협약에 따라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의장이 각 의원의 의견을 종합, 본 학칙 개정안에 대해 원안 통과하자는 의견에 모든 의원의 동의로 의결하다.

6. 폐회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완료되었으므로 폐회하자는 의장의 건의와 전체 의원의 동의·재청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10시에 폐회하다.

2025년 06월 12일